

[별표]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제2조 관련)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 가.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나.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2.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 가. 진료기록 초안 작성
- 나.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 다.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 라.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 마.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가.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1) 일반 관리

- 비위관(L-Tube, NG-Tube) 등의 삽입·교체
-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
(* 예: 누공삽관된 배액관, 위루관, 방광루관, J-P drain, Hemovac, 등)

2) 심화관리

- 기관절개관(T-Tube) 제거
-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교체
- 중심정맥관(C-line, PICC) 조영제 투여

- 중심정맥관(C-line, PICC) 제거

나. 상처 · 장루 · 욕창 관리

- 1) 복합 드레싱(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
- 2) 위루 · 장루 · 방광루 등의 드레싱
- 3) 3단계 욕창 드레싱
- 4) 흡인 드레싱

다.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 1) 호흡치료(Respiratory Therapy) (※ 호흡 재활치료 제외)
- 2) 인공호흡기 설정 (* 예: 압력 조절, 산소농도 조절, 양압 조절 등)

라. 침습적 시술 및 처치

- 1) 동맥혈 천자
- 2) 말초동맥관(A-line) 삽입
- 3) 피부 봉합(Skin Suture) · 매듭(Tie) 및 봉합사 제거(Stitch Out)
- 4) 피하조직의 절개(Incision) 및 배농(Drainage)

마. 기타 시술 및 처치

- 1) 외상 후 석고붕대(Cast, 톱깍스)
- 2) 외상 후 부목(Splint, 반깍스)
- 3) 방광 내 BCG 주입
- 4) 전립선 마사지
- 5) 직장수지검사 (※ 출혈 등 객관적 사실확인 목적으로 수행, 진단 목적 불가)
- 6) 분만과정 중 내진
- 7) 개흉심장마사지 보조
- 8) 프로토콜 하 인공심폐기를 제외한 체외순환 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지원

바. 전문적 시술 및 처치 (※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한정)

- 1) 골수천자
- 2) 복수천자
- 3) 기관절개관(T-Tube) 교체
- 4) 4단계 욕창 드레싱

4. 수술 지원

가. 수술 지원

- 1)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 · 예진
- 2)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 3) 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
- 4)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나. 체외순환

- 1)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 2) 체외순환 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준비 및 관리
- 3)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 4)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 비고

1.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는 제2호에 따라 작성한 기록 초안 등에 대하여 의사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사

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 제2호마목의 행위를 수행할 때에는 의사가 환자의 특성, 상태, 상황 등에 따른 검사·약물의 처방에 관하여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이를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조제1항 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제3호마목 및 제4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제3호바목의 행위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다.